

- 제 목: 제53차 이사회
- 일 시: 2018.08.31(금)17:30
- 장 소: 차 목 원

회 의 록



사회복지법인 수경복지재단

제53차 이사회 회의록

- 회의소집 통지일 : 2018. 08. 20(월)
- 일 시 : 2018. 08. 31(금) 17:30~19:30
- 장 소 :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176길 16(차목원)
- 재적이사 총 7명 중 6명 참석, 감사 1명 참석
 - 이 사 : 김상근, 김덕진, 김성수, 박태영, 민충기, 이기연
 - 감 사 : 강기표
 - 배석인원 : 박임순, 서금지, 김길동
- 안 건
 - 제1호 안건 : 법인 및 산하시설 추가경정예산(안)
 - 제2호 안건 : 법인 및 산하시설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안)
 - 보고사항

■ 회의내용

1. 성원보고

김길동 국장이 재적이사 7명 중 6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김상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다

2. 개회

김상근 대표이사가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17:30분 수경복지재단 제53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3. 대표이사 인사

김상근 대표이사가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주신 이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다. 특히 올해는 몇십 년만의 더위라고 할 정도로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최근에는 장마철을 떠올릴 정도로 잦은 비가 내리고 있어 그 어느 해보다도 힘겨운 여름을 보냈는데 여러 이사님들께서 모두 건강하신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더욱 감사드리며,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도 고견을 부탁드린다며 인사에 갈음하다.

4. 전자회의록 처리

- 김상근 대표이사가 전자회의록 처리를 상정하고, 김길동 국장에게 회의록을 보고하게 하다.
- 김길동 국장이 전자회의록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보고하다.

- 김성수 이사가 전자회의록 검토 후 이의 없음을 말하고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하다.
- 이기연 이사가 재청하다.
- 김상근 대표이사가 전자회의록 처리에 관해 이의 없는지를 묻고 이의 없음을 확인한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받기로 가결 처리하다.

5. 부의안 심의

□ 제1호 의안 : 법인 및 산하시설 추가경정예산(안)

- 김상근 대표이사가 제1호 의안인 법인 및 산하시설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김길동 국장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다.
- 김길동 국장이 회의 자료에 의거하여 법인 및 산하시설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와 주요 증감내용에 대해 설명 드린다.
- 박임순 원장이 비슬원의 경우 세입영역에서 입소인원 감소로 수입이 감액되었고, 세출영역에서는 종사자 인건비가 감액된 것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주 내용이라며 설명 드린다.
- 김덕진 이사가 제52차 이사회에서 추경을 통해 수경방문요양센터 법인 전출금을 편성하였는데 다시 추가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 묻다.
- 서금지 소장이 지난 이사회를 통한 법인 전입금으로 수경방문요양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은 확보되었으나, 이용 대상 어르신의 증가로 신규채용하게 된 요양보호사의 급여지급 일과 요양급여 정산일과의 불일치로 인한 유동성의 문제로 법인 전입금을 증액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다.
- 박태영 이사가 전반적인 예산운용상의 문제가 아닌 일시적인 유동성의 문제이고, 그 원인도 이용 대상 어르신의 증가로 인한 것이므로 바람직하고 적절한 추경편성이라 생각한다고 말하다.
- 이기연 이사가 예산 총액의 변동 없이 수경방문요양센터 법인 전출금 증액과 수경주간 보호센터 법인 전출금 추가편성시 법인예산의 집행에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해 묻다.
- 김길동 국장이 수경주간보호센터 추가 편성분의 경우 법인에서 집행예정이던 금액을 수경주간보호센터로 이전하여 집행하는 것이고, 수경방문요양센터 증액 분은 자부담을 활용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법인 전체예산의 운용에는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다.
- 김성수 이사가 회의 자료를 살펴본바 법인 산하시설의 운영상황에 대응하여 적절하게 추경이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하다.
- 민충기 이사가 재청하다.
- 김상근 대표이사가 이의 여부를 묻고, 이의 없으면 '예'로 표해 주시기를 말하자 참석이사

전원이 “예”로 찬성을 표하여 ‘법인 및 산하시설 추가경정예산’의 건을 가결처리하다.

□ 제2호 의안 : 법인 및 산하시설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안)

- 김상근 대표이사가 제2호 의안인 법인 및 산하시설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안)을 상정하고 김길동 국장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다.
- 김길동국장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인 및 산하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자원봉사자 및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제정하고, 인사규정에서 누락되어 있던 ‘직책’에 대한 명시와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따른 직원임용 결격사유 추가를 주 내용으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설명 드리다.
- 김성수 이사가 법인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안)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 규정이 적절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다.
- 박태영 이사가 법인 산하시설 인사규정의 경우 법인 인사규정을 반영하여 법인직급 4급 이하의 직원은 법인 인사위원회를 통해 채용하고 5급 이하 직원은 시설 인사위원회를 통해 채용하는 것으로 시설 인사규정에 명시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하다.
- 민충기 이사가 5급 이하의 직원 채용은 시설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말하다.
- 이기연 이사가 소규모 시설의 경우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설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하다.
- 김덕진 이사가 재청하다.
- 김상근 대표이사가 이의 여부를 묻고, 이의 없으면 ‘예’로 표해 주시기를 말하자 참석이사 전원이 “예”로 찬성을 표하여 ‘법인 및 산하시설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의 건을 가결 처리하다.

□ 보고사항

- 김상근 대표이사가 제52차 이사회에서 의결하였던 ‘법인 임원 및 대표이사 선임’ 부분은 이사회 회의록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2018년 6월 26일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 기관에서 등기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설명 드리고, 등기내용을 이사님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스캔한 후 파일을 보내드리겠다고 설명하다.

□ 기타 안건

- 김상근 대표이사가 기타 안건이 없는가를 묻고 기타 안건이 없음을 확인하다.

6. 폐회

- 박태영 이사가 폐회하기를 동의하고, 민충기 이사가 재청하다.
- 김상근 대표이사가 폐회에 이의 없음을 묻고,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19:30에 폐회를 선언하다.

이상과 같이 제53차 사회복지법인 수경복지재단 이사회에서 결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8. 5.



대표이사 김상근



이사 김덕진



이사 김성수



이사 민충기



이사 박태영



이사 이기연

